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범위의 기준의 오기된 문구를 수정하고,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부령 제801호, 2020.12.29., 공포·시행)에 따라 보좌기관의 명칭을 공항항행정책관에서 공항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7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7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항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“별지 제18호의2 서식”를 “별지 제18호의3서식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3항 전단 중 “처분 량이”를 “처분량이”로, “처분 량보다”를 “처분량보다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3항 중 “항공안전감독 등을”을 “항공안전감독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공항항행정책관실”을 “공항정책관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소속 기관장”을 “항공분야 소속 기관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항공행정기관의 장”을 “항공행정기관장”으로 한다.

제27조 중 “훈령은”을 “규정은”으로 하며, “2024년 7월 31일”을 “2027년 7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과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■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[별표 1]

행정처분량의 조정 등 (제14조 관련)

범위	감 경	가 중
1/3	· 감경사유가 인정되나, 위반의 정도 · 결과를 고려할 때 조금만 감경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	· 가중사유가 인정되나, 위반의 정도 · 결과를 고려할 때 조금만 가중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청문조서 등) ① (생략)	제22조(청문조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처분 대상자는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·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의하여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때 처분 대상자가 구두로 정정요구를 한 경우 처분주재자는 그 취지를 청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 <u>별지 제18호의3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2(위원회와 청문의 병행)	제23조의2(위원회와 청문의 병행)
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청문을 실시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<u>처분량</u> 이 당초 처분 대상자에게 고지하였던 <u>처분량보다</u> 가중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해 건에 한하여 재 청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③ ----- ----- <u>처분량</u> 이 ----- ----- <u>처분량보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5조의2(행정처분 · 지도의 종류) ① · ② (생략)	제25조의2(행정처분 · 지도의 종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<u>항공안전감독</u> 등을 담당부서에서도 제1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26조(업무의 관장 등) ① (생략) ② 항공정책관실 및 <u>공항항행정책관실</u> 소관 사항에 대한 처분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. ③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<u>소속기관장</u>은 처분심의위원회, 과징금·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 ④ <u>항공행정기관의 장</u>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. 제27조(유효기간) 이 <u>훈령</u>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7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③ ----- <u>항공안전감독</u> ----- ----- -----. 제26조(업무의 관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공항정책관실</u> ----- ----- -----. ③ ----- <u>항공분야 소속 기관장</u>은 ----- ----- -----. ④ <u>항공행정기관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7조(유효기간) -- <u>규정은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7월 31일</u> ----- -----.
---	---